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조문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b>『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』 특약 (구 하나은행)</b></p> 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 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(구 하나은행, 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<b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b>』, 『<b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</b>』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과 공무원연금법, 민사집행법, 동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<b>실명의 개인</b>으로 한다.</p> <p><b>제 3 조~ 제 9조</b> (생략)</p> <p><b>제 10 조</b> 위 제 5 조의 수수료 우대서비스의 내용 및 대상요건은 <b>변경가능하며,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,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한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린다.</b></p>	<p><b>『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』 특약</b></p> 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“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<b>예금거래 기본약관</b>』, 『<b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</b>』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과 공무원연금법, 민사집행법, 동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<b>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</b>로 한다.</p> <p><b>제 3 조~ 제 9조</b> (좌동)</p> <p><b>(삭제)</b>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가입대상 추가</p> <p>조문 삭제 (내용 중복)</p>